

건축협정 인가공고

파주시 동패동 1832 외 2필지 상의 건축협정 신청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7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7. 10.

파 주 시 청



1. 명 칭 : 동패동 1832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
2. 목 적 : 건축협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
3. 대지위치 : 동패동 1832, 1832-1, 1832-2
4. 유효기간 : 건축협정 폐지 시까지
5. 협정내용 : 「건축법」 제7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
 - 조경, 부설주차장 등 부대시설 통합
 - 건폐율, 용적률 통합
 - 지하층의 설치
 - 맞벽건축의 구조 및 형태
 - 계단 및 E/V 등 공용부 통합 설치
 - 건축설비(전기, 통신, 상하수도 등) 통합
6. 게시장소 : 시 홈페이지
7. 기 타 :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허가3과 건축허가3팀(031-940-8782)에서 열람 가능. 끝.